

수원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712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7123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19가단5401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민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6. 16.

판결선고 2022. 8. 1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19가단54015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D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금2451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그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A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3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D에게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며,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D에게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A: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 A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의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F와 H가 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F와 H는 각 우선변제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올나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F는 2016. 9. 19., H는 2010. 10. 28. 각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5. 7. 27.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최선순위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H는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인도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최선순위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4. 20.”을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2. 6. 16.”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7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사해행위로 인정하면서도 가액배상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동담보가액을 위 인정범위를 넘어 3,700만 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 변론종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8억 5,000만 원이므로 위 8억 5,000만 원에서 위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합계 8억 1,300만 원을 공제하면 가액배상의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은 3,7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2행부터 제23면 제10행 사이의 “나. 원상회복의 가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를 상대로 D에게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이때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이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 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M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수익자인 피고 B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대신 취득한 것이 있어야 그 취득한 물건 또는 권리를 채무자인 D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성남지원이 2020. 7. 2. 피고 B에게 240,142,39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154,188,956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2020. 7. 6. 성남지원에 피고 B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2020가단220224)를 제기한 사실, ② 피고 B에 대한 위 배당액 중 154,192,335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 소 제기로 인하여 성남지원 2020금2449호로 공탁된 사실, ③ 피고 B이 위 배당액 중 이의 없는 배당금을 찾아가지 아니하자 대한민국은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85,955,321원을 성남지원 2020금2451호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 중 성남지원 2020금2449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그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의 결과에 따라 그 귀속주체가 정해지므로 피고 B이 위 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에게 위 채권에 관하여 D에 대한 양도 및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 중 성남지원 2020금2449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그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공탁자로서 위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은 D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이자채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A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규, 판사 신미진, 판사 박미영

목 록

1. 성남시 수정구 AP 대 121㎡
2. 성남시 수정구 AP 지상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주택및 근린생활시설
 - 1층 내지 4층 각 70.55㎡
 - 옥탑 10.08㎡
 - 지층 57.34㎡
 - 내역: 1층 소매점, 2층 사무실, 3층, 4층 주택
 - 지층: 대중음식점 38.07㎡, 보일러실 19.27㎡
 - 옥탑 10.08㎡
3. (1동의 건물의 표시)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AQ에 있는 AR아파트 AS동
 -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AT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트러스지붕 27층 아파트
 - 지1 65.24㎡
 - 1층 내지 23층 각 417.92㎡
 - 24층 내지 27층 각 329.75㎡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AQ대 44447.6㎡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번호: AU
 -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83.17㎡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 대지권비율: 44447.6분의 36.32 끝.

채권의 표시

피고 B이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L 부동산입의경매사건에 대한 240,142,394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 및 그 공탁금의 이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금2449호 및 2020금2451호로 공탁된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그 공탁금의 이자).
끝.

